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기간 명확화〉
■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78호)

2026.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권리침해정보 임시조치 기한 구체화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영진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3. 11.

다. 회 부 일 : 2026. 3.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이행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별로 조치 시점이 상이하게 운영될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48시간 이내’에 하도록 그 이행 시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삭제 조치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권리 침해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2항).

Ⅲ. 검토의견

1. 권리침해정보 임시조치 기한 구체화 등(안 제44조의2제2항)

가. 개정안 요지

-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자가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삭제등을 요청한 경우,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48시간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2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u>지체 없이</u>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48시간 이내----- ----- ----- ----- ----- ----- -----.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정보에 대하여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블라인드 처리 등의 임시적인 조치를 하도록 제4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임시조치를 제44조의7 소정의 ‘불법정보’에 대응하여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임시조치라고 함.
- 이때의 권리침해정보는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인격권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인격권에 대한 2차적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당사자의 자율적인 내용 규제 제도를 마련한 것이며 인터넷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법적 분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입법취지를 가짐¹⁾.
-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의 삭제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이행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그 조치 시점이 상이할 수 있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개정안은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임시조치의 시한을 요청을 받은 순간부터 48시간 이내에 하도록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삭제

1) 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 이창범·황창근·정필운 공저

조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을 통해서 조치 시점을 통일시켜 임시조치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제44조의2제2항에서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임시조치의 기한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언제 이뤄질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안 제44조의2제2항은 이러한 ‘지체 없이’를 ‘48시간 이내’로 구체적 이행 기한을 명시하도록 법문언을 변경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별로 조치 시점이 상이하게 운영되는 것을 바꾸어 삭제 조치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별로 삭제요청을 받은 내용, 제반 사항, 각종 기술적 환경 등이 상이함을 고려할 때 조치 시점이 달라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48시간 이내로 변경할 경우에도 여전히 48시간 이내에서 조치 시점이 상이하게 운영될 수 있으나, 아무리 늦어도 명시된 기한까지 이뤄지리라는 예측은 할 수 있어,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을 통해 현행법보다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개정안이 목표로 하는 권리침해정보로 인한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는 이행 기한의 명시를 통하여 임시조치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현행법은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삭제 요청등을 받으면 시간적으로 가능한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정보를 통상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고, 신고 자료 제출 미비 보완에 따라 지연되거나 사업자 판단 어려워서 KISO 심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 개정안에 따라 ‘48시간 이내’를 명시할 경우, 오히려 임시조치는 48시간 이내에만 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기존과 같이 삭제 요청 등으로 인지하는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삭제요청 등이 있는 시점부터 48시간 후에 처리하는 식으로 조치 시점이 늦춰질 수 있음.
- 한편, ‘지체 없이’ 문구를 단순히 ‘48시간 이내’로 변경하기보다는,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되, 늦어도 삭제요청 등이 있는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와 같이 그 상한을 병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예외로서의 상한을 병기하더라도 그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이

상 기업은 상한에 맞추어 최대한 늦게 업무를 처리할 유인이 생기므로 개정으로 인하여 24시간 이내에 조치가 이뤄지던 관행이 훼손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불법촬영물등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²⁾에서도 신고나 삭제요청 등으로 조치의무사업자가 이를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을 통해 48시간이라는 기한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안에 따른 경우, 일률적으로 기한을 ‘48시간 이내’로 규정할 경우 오히려 조치 시점이 늦춰질 우려가 있으므로 ‘지체 없이 조치하되, 상한을 24시간’으로 설정하고 정당한 사유에 대한 면책 규정을 단서로 추가로 두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성평등가족부는 불법촬영물등 디지털성범죄물의 경우 정보통신서비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스 제공자들이 삭제 요청 시 통상 24시간 이내에 삭제등 조치를 취하고 있던 것이 오히려 48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으므로,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정보 삭제등 조치는 현재 대부분 실시간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불가피하게 48시간 이내에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48시간 이내라는 물리적 시간을 명시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지체 없이’라는 현행 규정이 신속한 처리와 정당한 이유로 인한 예외를 조화시키고 있고, 일률적인 기한을 도입하면 실무상 혼선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28
